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816

발의연월일: 2025. 3. 11.

발 의 자:김상훈·강대식·윤한홍

권성동 • 고동진 • 박충권

김소희 · 김선교 · 이만희

김형동 • 이종욱 • 김승수

권영진 · 최수진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경찰청의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 10,411명이었던 검거인원이 2023년에는 17,817명으로 약 71% 증가하였으며, 마약류 투약 후 폭력·교통사고 등 2차 범죄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특히 해상에서의 교통사고는 일단 발생하는 경우 그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사고 수습도 어렵기 때문에 마약류 투약 후 선박 운항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약물·환각물질의 영향하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선박 도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약물·환각물질 투약, 흡연 등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있지 아니하여 단속 및 예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선박을 운항하거나 도선하는 사람이 약물·환각물질을 투약, 흡연 등 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해기사 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마약류 투약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 제42조 및 제113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약물·환각물질을 투약, 흡연및 섭취(이하 "투약등"이라 한다)하였는지를 간이시약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물·환각물질 투약등을 하였는지를 측정하여야 한다.
- 1.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해상교통 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거나 도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3.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약물·환각물질 투약등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동의를 받아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약물·환각물질의 영향 아래에 있는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

제41조 중 "제40조를"을 "제40조제1항을"로 한다.

제42조제3호 중 "제40조를"을 "제40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 작할 것을 지시하였거나 도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 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1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2(벌칙) ①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사람도 포함한다)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측정 요구에 1회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17조 본문 중 "제116조까지의"를 "제113조까지, 제113조의2, 제114 조부터 제116조까지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제40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생 략)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약물·환각물질
	을 투약, 흡연 및 섭취(이하
	"투약등"이라 한다)하였는지를
	간이시약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해양경찰청 소
	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약물ㆍ환각물
	<u>질 투약등을 하였는지를 측정</u>
	<u>하여야 한다.</u>
	1.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
	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u>는 경우</u>
	2. 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ㆍ환

<신 <u>설></u>

<신 설>

<신 설>

양경찰서장은 운항자 또는 도

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 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 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 위 또는 도선을 하지 못할 우 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 하였거나 도선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 는 경우

- 3.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약물・환각물 질 투약등 여부를 측정한 결과 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동 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 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약물·환각물 질의 영향 아래에 있는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 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필요 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다.

제41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해 제41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

선사가 제39조제1항 또는 <u>제40</u> 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운항 자 또는 도선사가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상태가될 때까지 조타기 조작 또는 조작 지시를 하지 못하게 명령하거나 도선을 하지 못하게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제42조(해기사 면허의 취소·정지 요청)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있다.

- 1. · 2. (생략)
- 3. 제40조를 위반하여 약물·환 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 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 나 그 조작을 지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

<u>제40</u>
조제1항을
제42조(해기사 면허의 취소·정
지 요청)
 1 O /원레기 기 ()
1.·2. (현행과 같음)
3. <u>제40조제1항을</u>

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 시한 경우

<신 설>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를 위반하여 약물·환 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 상적으로 「선박직원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 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	_	_	_	_	-	-	-	_	_	-	-					_	_	_	_	_	-	-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4. 제4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거나 도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12소(멀직)	

<u><삭 제></u>

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

2. (생 략) <신 설> 2. (현행과 같음)

제113조의2(벌칙) ①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 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 여 정상적으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 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 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 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2 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측정 요구에 1회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 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 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 년 내에 다시 측정 요구를 따 르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 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u> 벌</u> 그
제117조(양벌규정)
제113조까지, 제
113조의2, 제114조부터 제116조
까지의